

##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재분배정책의 과제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서론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분배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화두로 부각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분배를 개선하지 않고 재분배정책 만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재분배정책은 온갖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재분배정책이 시장의 불평등화 경향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분배 국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분배정책의 역할이 결코 축소되거나 간과될 수는 없다. 여전히 한국의 재분배정책 효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주요 복지급여의 포괄성이나 급여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재분배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 필요인가? 재분배정책을 위한 재정투입을 늘리면 되는가?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재분배정책의 양적 확대가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재분배 정책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재배치하고 체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재분배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의 전제 조건은 소득분배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이를 근거로 어떤 집단에 대해 어떤 수단을 통해 얼마나 급여를 제공하고 조세나 사회보장 부담금을 징수해야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 문제에 천착하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성명재·박기백(2009)나 홍석철·전한경(2013) 등은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장지연·이병희(2013)는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가장 주목해야 할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강신욱·김현경(2016)은 가구주나 배우자의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수익률의 변화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수익률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데 더 큰 작용을 했음을 보였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들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검토의 대상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선 연구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집단의 범위나 시

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검토할 때 분석 대상을 2인 이상의 도시 가구로 한정하고 있거나 분석 대상 시점이 2010년 전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sup>1)</sup>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재분배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변화 양상에 대해 장기적이면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좀 더 시의성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나, 그 이후의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6년의 소득분배는 이전 5년의 경향과 달리 큰 폭으로 악화되는 반전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해석하는 것이 재분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로부터 재분배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이른바 '97년 체제'가 지속된 기간이기도 한데, 이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의 변화에도 일관되게 지속되는 요인이 있는가하면 새롭거나 이전과 달리 작용한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은 전체 기간을 두 시기, 즉 1996~2006년과 2006~2016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앞의 10년은 경제위기의 충격이 노동시장에 구조화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뒤의 10년은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변화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두 기간에 걸쳐 재분배정책이 분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나 보완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요인을 단계적 분해 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방법은 강신욱(2014)에서 적용된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을 더욱 확장하고 1인 및 비도시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더 나아가 5장에서는 가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어떤 유형의 가구에 재분배 정책이 집중되었는지 검토하였다. 6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 2. 자료와 방법

### 1) 데이터

이 글의 분석에서 사용할 자료는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과 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는 모두 도시와 농어촌 모두를 표본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거나 도시가구로 제한할 경우에는 1990년 이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의

---

1)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분배가 약하지만 개선 추이를 보인 것도 불평등의 심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의 다수 연구들은 기존의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실제 소득불평등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간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비도시의 소득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과 1인 가구의 비중 변화가 전체 소득분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소득분배의 변화 양상을 온전히 살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특히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전개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경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1997년 전후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하는 것은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구 소득 분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표본가구에 대해 매월 소득과 지출을 조사한 후 연간 평균값을 제공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가구별 소득은 연간 평균 월 소득인 셈이다. 그런데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소득과 지출은 1996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조사된 것이다. 이를 평균하여 값이 연간 소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는 이와 별도로 연간소득이 제공되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이 값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 항목을 이용하여 가처분소득을 구할 경우에는 10월과 11월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두 자료 상의 불일치로 인해 2006년 전후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sup>2)</sup>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러한 한계를 상쇄할 것으로 본다.

## 2) 소득불평등에 대한 단계적 분석 방법

빈곤이나 불평등 등 소득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소득은 본질적으로 '가구'소득이다. 그런데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의 합으로 구성되고, 개별 가구원의 소득은 각 개인의 특성(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연령, 성별, 학력 및 경력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구소비실태조사>나 <가계동향조사> 모두 모든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해서만 개인별 소득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개인 단위의 특성과 가구 소득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구주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구주의 개인특성이 가구의 인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의 취업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감안하다면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전체 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25~64세의 생산연령 가구와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로 구분한다. 생산연령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무직자 가구로 구분한다.

2) 예를 들어 비교 대상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로 동일하게 했을 때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77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 0.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소득원은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소득활동의 주체에 따라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주의 경우는 더 세분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주 소득원을 근로소득(임금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이 개인단위로 보고되지 않는 비노동소득(재산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과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료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이란 이와 같이 가구와 소득원을 세분한 후 비교 대상 집단과 소득범주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교의 방법은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비교 단계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25~64세의 가구주 가운데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근로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을 측정한다(A). 다음 동일한 연령대의 가구주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주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의 불평등을 측정한다(B). A와 B를 비교하면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소득 불평등이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취업 가구주까지를 포함한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C)을 측정 후 B와 C를 비교하면 가구주의 취업상태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가구주 + 배우자의 노동소득 불평등(D), 전체 가구원의 노동소득 불평등(E)을 비교하면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및 수입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시장소득 불평등(F)과 E를 비교한다면 재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분포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이제 비교 대상을 노인 가구주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시장소득 불평등(G)을 계측한 후 이를 F와 비교하면 노인 가구주의 비중 증가나 노인-비노인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불평등(H)를 추정하여 G와 비교하면 재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되 A~H까지의 불평등 지표를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의 충격이 상이한 시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소득불평등 분해를 위한 도식 - 소득 범주 및 대상 집단의 확대



자료: 강신욱(2012)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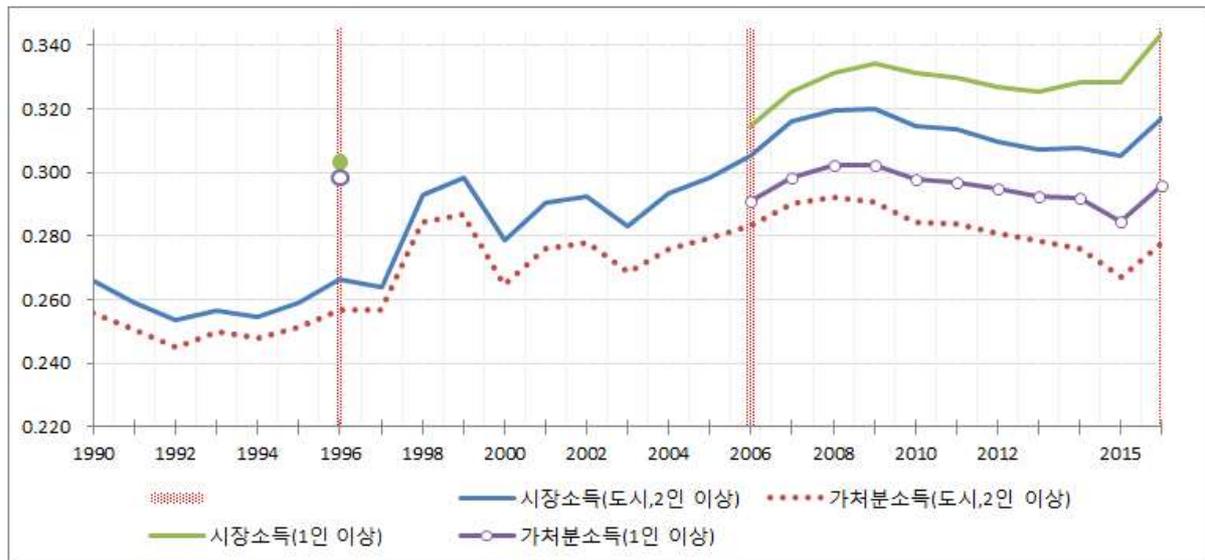
가구의 소득구성을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접근법은 OECD(2011)에서 제시었고, 강신욱(2012, 2014), 이병희(2014) 등에서는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에 적용된 바 있다. 이 글은 강신욱(2014)과 달리 비도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비교의 시점을 19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최근까지로 확장하였다. 또한 F → G → H 단계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할 때 가구의 연령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3. 소득불평등의 변화 요인

#### 1)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한 개괄

앞 장에서 설명한 분석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가구소득 불평등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2>는 1990년 이후의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1990년부터 시계열이 이어지는 곡선은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이고, 2006년부터 시작되는 곡선은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이다. 2006년 이전의 경우 1인 가구 포함 전국가구의 소득조사는 부정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1인 가구 포함 가구소득 불평등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2> 소득불평등(지니계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위의 <그림 2>를 보면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이가 관측된다. 특이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던 1998~1999년,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2009년이다. 2010 이후 지니계수

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특이한 사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6년의 불평등 증가는 다소 의외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이 글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예를 보면 불평등의 심화 추이가 적어도 수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2016년의 상황은 이후의 변화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세 시점은 각각의 시기를 대표한다는 장점이 있다. 1996년은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를, 2006년의 경우 외환위기의 직접적 충격에서는 벗어났으나 그 이후의 구조 변화 요인이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를, 그리고 2016년은 최근의 시점의 상황을 보여준다.

## 2) 단계적 비교를 통해 본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

2장에서 설명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돌아가, 각 시점에서 단계별로 지니계수를 비교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단계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가구주 이외 가구원 소득의 포함 범위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A단계, 즉 가구주가 생산연령대이면서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들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계산한 값은 세 시점에서 각각 0.2727, 0.3371, 0.3215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2016까지의 20년 기간 가운데 처음 십년간은 큰 폭으로 지니계수가 증가하였고, 이후 십년은 반대로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 20년 전반을 통해 보면 지니계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의 G와 H를 보면 1996~2006년은 물론 2006~2016년 사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평등의 변화 양상은 시기별, 단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1> 단계별 (집단 및 소득범주별) 지니계수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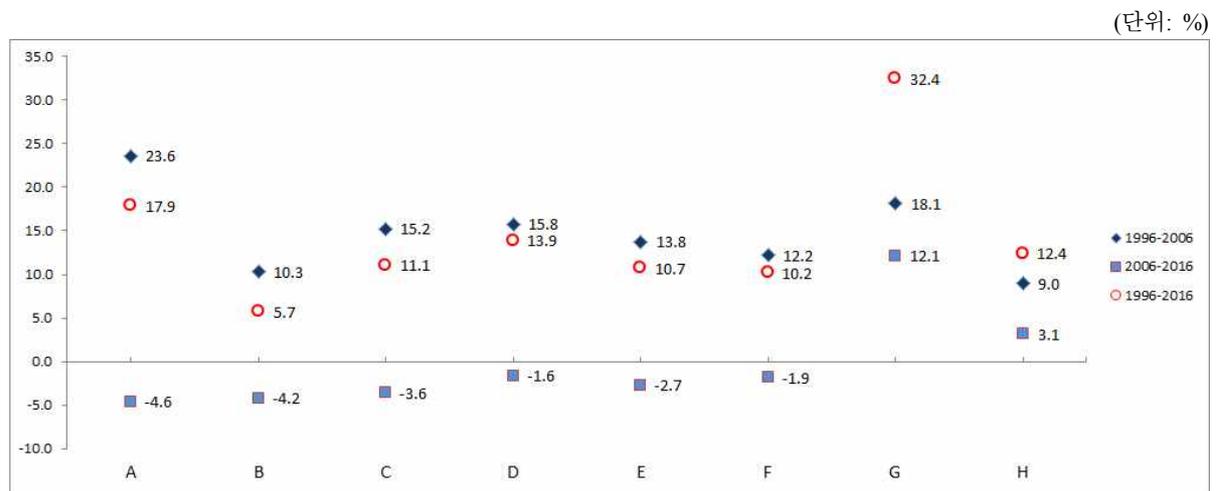
단계	구분			1996년	2006년	2016년
	가구주 연령대	포함 가구원	비교 대상 소득			
A	25~64세	가구주(근로자)	근로소득	0.2727	0.3371	0.3215
B	25~64세	가구주(취업자)	노동소득	0.2976	0.3284	0.3147
C	25~64세	가구주	노동소득	0.3377	0.3891	0.3751
D	25~64세	가구주+배우자	노동소득	0.3376	0.3908	0.3846
E	25~64세	모든 가구원	노동소득	0.3078	0.3501	0.3407
F	25~64세	모든 가구원	시장소득	0.2835	0.3182	0.3123
G	전 연령	모든 가구원	시장소득	0.3033	0.3583	0.4018
H	전 연령	모든 가구원	가처분소득	0.2983	0.3251	0.3353

주: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표 1>에 제시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각 단계의 지니계수가 시기별로 얼마나 변화했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그림 3>이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20년을 놓고 볼 때, 생산연령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A)의 경우 초반 10년 간(1996~2006년)은 23.6% 상승하였고 후반 10년(2006~2016년)은 4.6% 감소하였다. 전 기간을 통해서는 17.9% 증가하였다. A부터 F까지의 단계별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초반 10년간은 상승, 후반 10년간은 하락, 그리고 전체 20년 동안은 상승이라는 공통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G와 H 단계의 지니계수는 후반 10년 동안에도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H)의 변화 모습을 보면 초반 10년간은 9.0% 상승, 후반 10년은 3.1% 상승하여 전 기간을 통해 12.4%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단계별, 시기별 지니계수 변화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전체 기간의 불평등 변화를 비교하여 볼 때 지니계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G 단계, 즉 노인가구주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이다. G는 20년 동안 32.4% 증가하였다. 그런데 G 단계에는 이전 단계의 변화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A~F까지의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인 것은 A 단계이다. A와 G를 비교해 보면 초반 10년 사이에는 A의 증가율이 G의 증가율에 비해 높았다. 즉 근로자 가구주의 임금소득 불평등 심화 속도가 노인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 증가속도보다 높았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확대가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를 주도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후반 10년에 들어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후반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고령화와 요인이 불평등의 심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위의 <표 1>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전환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율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각 시점별로 A의 지니계수에 비해 B의 지니계수가 어느 정도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값들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완화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할 수 있고, 이 요인들이 작용하는 방향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표 2〉 단계별 비교를 통한 소득불평등 심화 요인 비교

대상집단 및 소득범주	이전 단계의 불평등 대비 변화(%)			변화에 대한 해석
	1996	2006	2016	
A. 근로자 가구주 임금소득				
B. 취업가구주 노동소득	9.1	-2.6	-2.1	자영자 특성 변화(하향평준화)
C. 가구주 노동소득	13.5	18.5	19.2	가구주 고용상태 악화
D. 가구주, 배우자 노동소득	-0.1	0.4	2.5	동류혼 경향 강화
E. 가구 노동소득	-8.8	-10.4	-11.4	기타 가구원 취업 효과 증대
F. 가구 시장소득(비노인)	-7.9	-9.1	-8.3	변화 거의 없음
G. 가구 시장소득(노인포함)	7.0	12.6	28.6	고령화 충격
H. 가구 가처분소득(노인 포함)	-1.7	-9.3	-16.5	재분배 정책의 효과 증대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예를 들어 1996년의 경우 B의 지니계수는 A에 비해 9.1% 높은 값을 보인다. 즉 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불평등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만을 계산했을 때에 비해 9.1%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자영자와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었거나 자영자 사업소득의 불평등이 근로자 근로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지는 후에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2006년과 2016년의 경우에는 이 값이 음수가 된다. 즉 자영자의 사업소득까지 고려함으로써 취업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그 원인 역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영자 가구주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주 근로소득에 비해 하향 평준화된 데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여 보면, B → C의 지니계수 증가율은 점점 더 커졌다. C → D의 증가율 역시 더 커졌다. 특히 C → D 과정에서의 변화는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상쇄시켜주다가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남녀가 결혼하는 추이, 즉 동류혼 assortive mating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된다. D → E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추가로 고려될 경우 불평등은 감소하고, 그 감소의 정도도 점점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구원 전체의 노동소득에다 가구 단위의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까지를 더할 경우(E → F) 불평등은 감소하는데, 감소의 정도는 시기별로 큰 변화가 없다. 이 단계에서의 불평등 감소는 주로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연령대의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비교하다가 노인 가구주 가구까지를 고려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불평등의 증가(F → G)는 고령화의 효과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화 효과에 따른 충격은 갈수록 크게 나타나서, 2016년의 경우는 전단계 대비 지니계수를 28.6%나 증가시키는 것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소득원천(공적이전소득,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을 고려할 경우(G → H) 지니계수는 감소하고, 그 감소율 또한 점차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 효과 또한 커져왔음이 확인된다.

요약하자면, 1996~2016년 사이의 20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에 더불어 배우자 소득의 효과 고령화의 효과 등이 불평등을 점점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기타 가구원의 소득 효과와 재분배 정책의 확대가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고, 그 효과 또한 점차 커져왔음을 알 수 있다.

#### 4. 단계별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한 분석

##### 1)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변화

4장에서는 3장의 <표 2>에서 논의된 단계별 불평등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생산연령대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비교함으로써 A → B단계의 불평등 심화 요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표 3>은 생산연령대 자영업자 가구주의 사업소득 불평등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자영업자 내부의 소득 불평등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는 근로연령대의 근로자 가구주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가구주 사업소득을 비교하고 있는데, 1996년에는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평균값에 비해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소득 평균값이 약 35.5% 높았으나 2006년과 2016년에는 자영자 가구주의 평균소득이 더 낮아졌다. 즉 앞의 3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 → B 단계에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은 자영자 가구주 소득의 하향 평준화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근로연령대 자영업자 가구주의 사업소득 불평등 변화

	1996	2006	2016
지니계수	0.3411	0.3326	0.3079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표 4> 근로연령대 취업가구주의 주 소득 비교

	1996	2006	2016
근로가구주 근로소득(a)	1,480,575	2,299,774	3,243,876
자영가구주 사업소득(b)	2,006,073	2,008,620	2,953,511
소득 비율(=100×b/a)	135.5	87.3	91.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취업 가구주만을 고려했을 때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비해 미취업 가구주까지 고려한 노동소득 불평등이 상승하는 것(B→C)은 미취업 가구주의 소득이 0이라고 볼 때 가

가구 취업률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취업 가구주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 5>는 이 점을 확인시켜준다.

<표 5> 근로연령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단위: 원/월, %)		
	1996	2006	2016
근로자	64.6	61.4	67.5
자영자	28.4	27.3	20.7
미취업	7.0	11.3	11.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1996년에는 근로 연령대의 가구주 가운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미취업 가구주의 비중이 7.0%였으나 2006년에는 11.3%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이보다 다소 더 증가하였다. 다시 환기하자면 이 비율은 고령자 가구주를 제외한 근로 연령대의 가구주 가운데에서 미취업 가구주의 비율이다. 청년층 실업의 악화나 조기 은퇴<sup>3)</sup> 등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구주의 취업률이 낮아진 것이 B → C 단계의 불평등 심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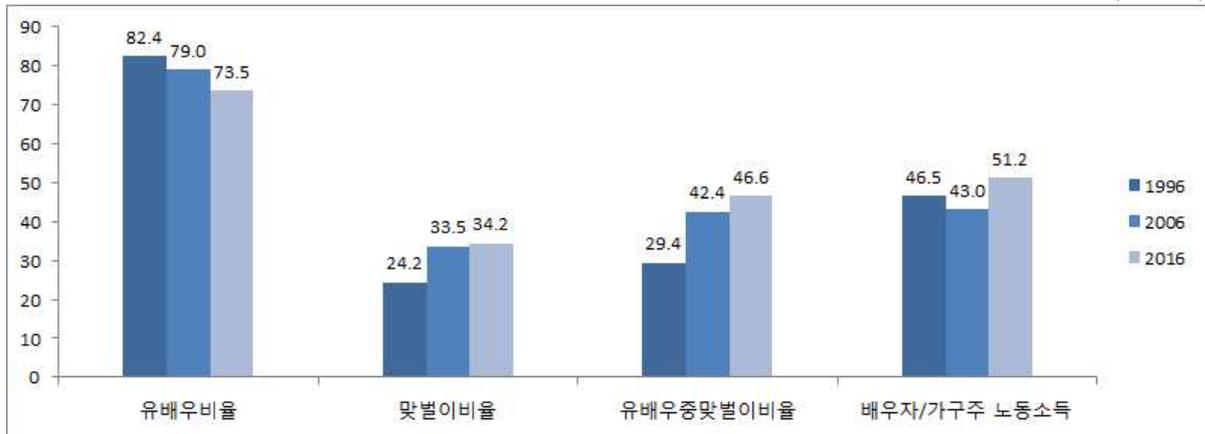
## 2) 가구주 소득과 가구원소득

가구주의 노동소득에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더하여졌을 때 불평등의 변화는 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배우자 또는 취업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분포, 둘째는 배우자 소득의 불평등도, 셋째는 배우자 소득과 가구주 소득의 상관관계이다. <그림 4>는 유배우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주 노동소득에 비해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단독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년 사이에 약 9%포인트 줄어들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1996~2006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년 사이에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1996년과 비교할 때 2016년의 가구주 노동소득 대비 배우자의 노동소득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

3) 미취업 가구주의 평균 연령도 48.6세(1996년), 49.0세(2006년), 51.0세(2016년)으로 높아졌다.

<그림 4> 배우자 특성분포와 상대소득수준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때에는 다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취업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여 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불평등이 다소 심화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모두 비교하거나 전체 가구의 배우자 노동소득 불평등을 추정하면<sup>4)</sup> 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낸다.

<표 6> 배우자 소득의 불평등

구분	1996	2006	2016
취업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배우자 노동소득	0.401	0.500	0.450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배우자 노동소득	0.798	0.742	0.715
전체 가구의 배우자 노동소득	0.834	0.793	0.79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이러한 요인들만을 놓고 보면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주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가구주 노동소득과 배우자 노동소득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상관관계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우선, 가구주의 노동소득과 배우자의 노동소득은 전 시점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상관관계수의 크기는 어떤 가구주와 어떤 배우자의 노동소득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관관계수 값 자체는 양수이다. 즉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높다. 그런데 취업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 상관관계수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미취업 및 무배우자 가구를 포함한 가구주 - 배우자 노동소득의 상관관계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상관관계수 증가 요인이 맞벌이 비중 증

4) 이 경우 취업 배우자나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배우자 노동소득은 0으로 계산된다.

가나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증가 효과와 결합되었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더해졌을 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 합은 더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표 7> 가구주 노동소득과 배우자 노동소득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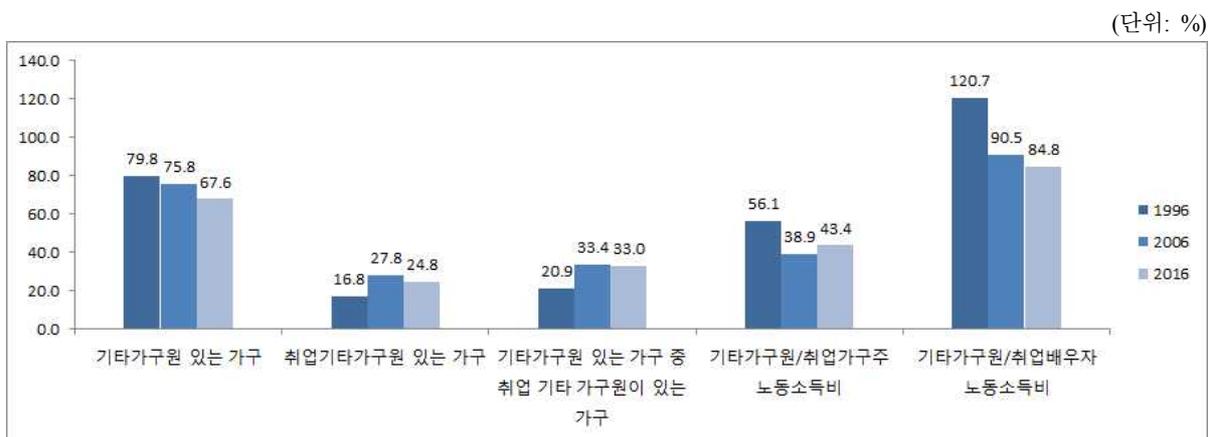
대상 가구주와 배우자	1996	2006	2016
취업가구주와 취업배우자	0.336	0.220	0.202
가구주와 배우자 (유배우자 가구)	0.018	0.098	0.109
가구주와 배우자 (무배우자 가구 포함)	0.067	0.163	0.194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에 적용되었던 이러한 분해 방법은 가구주 부부의 노동소득에 대한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의 역할을 살펴볼 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가구의 규모가 줄어들고 단독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그림 5>에서 보듯이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을 때 기타가구원이 취업한 가구의 비율은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 가운데에서 취업한 기타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96년의 16.8%에서 24.8%로 증가하였다.

취업한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소득 합은 취업한 가구주의 노동소득에 비해서는 대략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취업한 배우자의 노동소득에 비해서는 84.8% 수준이다(2016년). 이 비중은 1996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기타 가구원의 취업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의 상대적 크기는 감소한 것이다.

<그림 5> 기타 가구원의 분포와 상대소득 수준 변화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취업한 기타가구원 소득의 불평등은 <표 8>에서 보듯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

타가구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취업자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하였을 때에는 기타가구원의 소득불평등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니계수의 값 자체는 매우 높다.

〈표 8〉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불평등

	1996	2006	2016
취업한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0.371	0.535	0.500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0.868	0.840	0.832
전체 가구	0.894	0.871	0.876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마지막으로 기타 가구원의 소득과 가구주 부부(가구주 및 배우자) 노동소득 합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취업한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이들의 노동소득과 부부 노동소득의 상관계수는 1996년에만 양(+)의 값을 보일 뿐 이후 음(-)으로 전환되었다. 기타 가구원이 있어도 취업하지 않았거나 기타 가구원이 아예 없는 가구까지를 포함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면 대부분 음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그리고 그 절대값도 1996년에 비해 2016년에 커졌다. 즉 기타가구원의 노동소득은 가구주 부부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표 9〉 기타 가구원과 부부 노동소득의 상관계수

	1996	2006	2016
취업한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0.1551	-0.1262	-0.1585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	-0.1062	-0.1843	-0.1916
전체가구	-0.0646	-0.1181	-0.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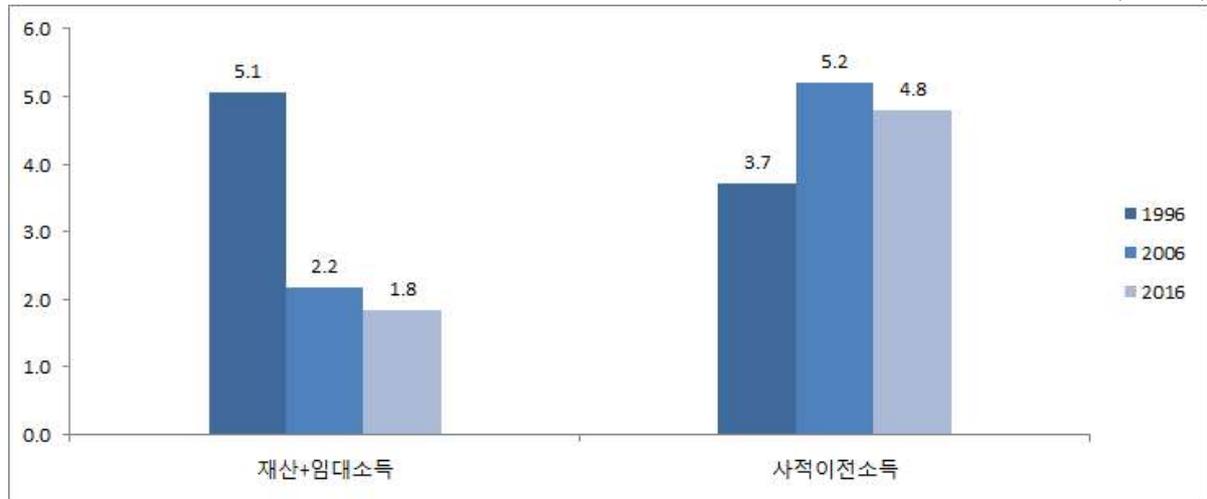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 3) 소득원천 사이의 관계

가구주가 근로연령대인 가구에서 재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노동소득 대비 비율 5% 내외이며,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 2006년 이후 대단히 낮게 나타난다. 사적이전소득 역시 노동소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재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역시 대단히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표 10>에서 보듯이 지니계수 값이 매우 크다.

〈그림 6〉 각 소득원천의 노동소득 대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표 10〉 소득범주별 불평등

비교 대상	1996	2006	2016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	0.685	0.822	0.853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	0.932	0.960	0.980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0.715	0.773	0.570
전체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0.932	0.882	0.931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표 11〉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상관계수

	1996	2006	2016
노동소득 - 재산소득	0.0687	0.0449	-0.0116
노동소득 - 사적 이전소득	-0.1533	-0.2105	-0.2034

주: 이탤릭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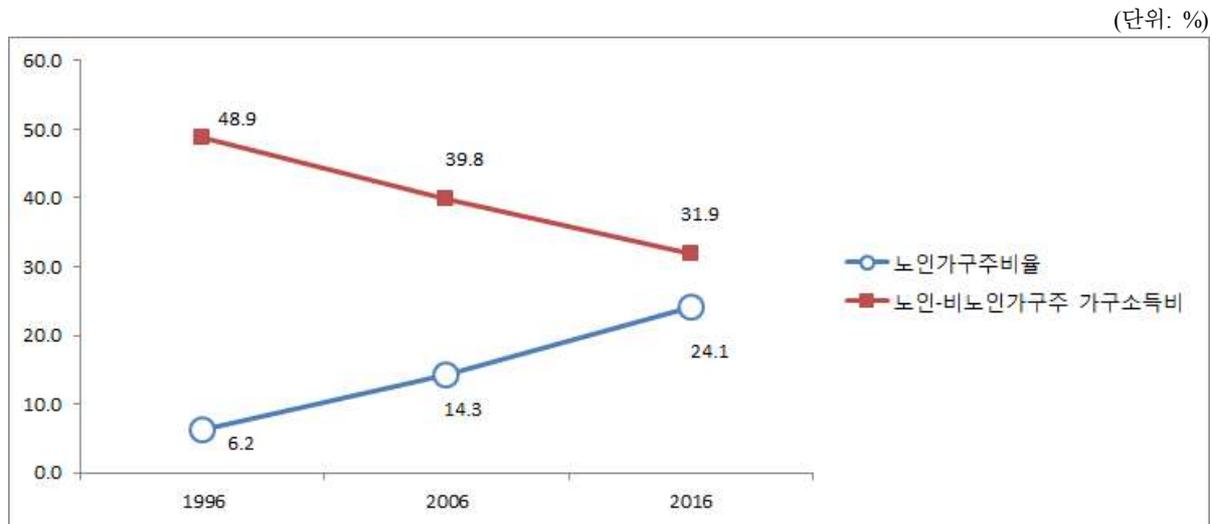
<표 11>에서 노동소득과 여타 시장소득 사이의 상관계수를 볼 수 있다.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상관계수는 매우 작은 양의 값을 지니다가 2016년에는 음(-)으로 전환되었지만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인다. 노동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이며, 그 절대값 또한 점차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적이전소득이 비중은 작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편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상쇄하는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고령화의 효과

일반적으로 고령화란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구소득 분포에서 고령화는 가구주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가 근로연령대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분석하다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주 가구까지 포함하여 불평등을 분석할 때 그 변화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노인 가구주의 비율 변화, 노인 가구주 내의 불평등 변화,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인 가구주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 등 요인이 그것이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전체 가구에서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1996년 6.2%에서 2016년 24.1%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노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와 비노인인 가구의 시장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표 12>에서 보듯이 노인 가구주 가구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7>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 및 상대적 소득수준 변화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소득격차의 확대는 단순히 노인가구주의 비중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비중이 늘어났더라도 상대적 소득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비노인 가구주 가구에 포함된 노인 가구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과 병행하게 된다면 노인과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즉 노인-비노인 가구의 소득격차 확대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 역시 가구의 구성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12〉 노인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 증가

구분		1996	2006	2016
노인 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0.4949	0.4758	0.5759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4678	0.3914	0.3983
	지니계수 감소 효과(%)	5.5	17.7	30.8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0.2835	0.3182	0.3123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2800	0.2973	0.2845
	지니계수 감소 효과(%)	1.2	6.6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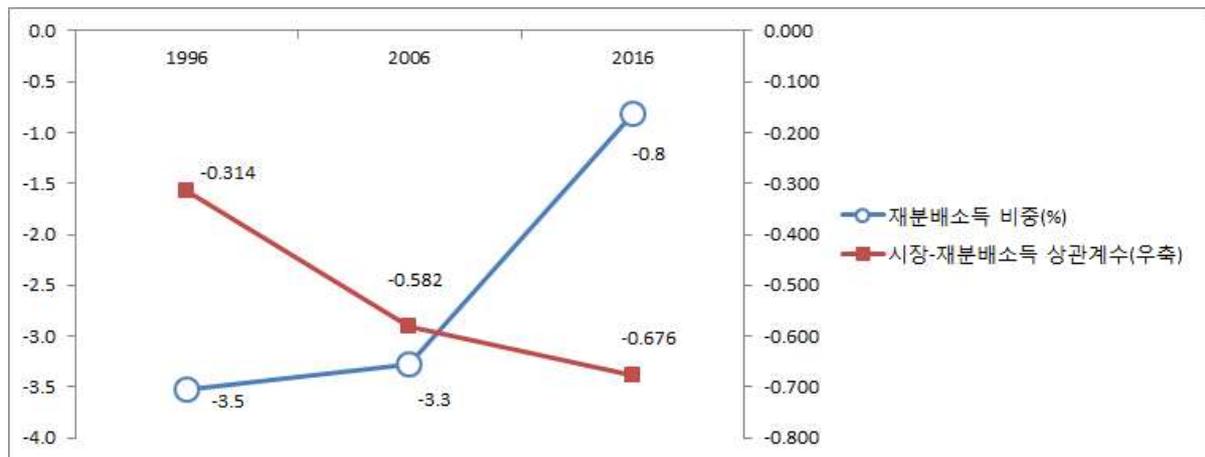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 5) 재분배 정책의 효과

가구 시장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작용하는 소득범주는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그리고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담금이다. 이들 범주를 합하여 여기서는 재분배소득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재분배소득의 재분배 효과에는 재분배소득의 시장소득 대비 비중 변화, 재분배소득과 시장소득의 상관관계 변화 등이 작용한다. 재분배소득이 시장소득의 불평등 해소에 더 크게 기여하려면 저소득층에서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증가해야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소득과의 상관계수의 값이 더 작아야 한다.

〈그림 8〉 재분배 소득의 비중과 상관관계 변화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그림 8〉에서 보듯이 시장소득 대비 재분배소득의 평균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전히 그 비율이 음수여서 평균적으로 가구의 부담이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재분배 소득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시장소득과 재분배 소득의 상관계수에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확인하였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재분배효과는 근

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에서보다는 노인 가구주 가구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5. 가구 유형별 재분배정책 효과<sup>5)</sup>

1) 소득계층별 재분배 소득 비중 변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그 비중의 계층별 분포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표 13>은 각 시기별로 노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계층별 소득증가율과 재분배소득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소득계층은 가구의 시장소득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이 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저소득층의 명목 시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라는 점이다. 10개 분위 가운데 최하위 1분위는 20년 동안 매년 5.8%씩 명목소득이 감소했다. 초반기 10년 동안에는 4분위까지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시장소득증가율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1~2분위의 소득증가율이 확연히 낮고(실질소득 감소) 다른 소득 분위의 소득증가율은 시기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초반 10년간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낮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은 높은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모습을 보이는데, 후반 10년간 이런 양상이 미세하게 완화되었지만 전체 20년에 걸쳐 이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빈곤화를 동반한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관측되는 것이다.

<표 13> 소득분위별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과 재분배 소득 비중

(단위: %)

소득계층	시장소득증가율			재분배소득비율			가처분소득증가율		
	1996~2006	2006~2016	1996~2016	1996	2006	2016	1996~2006	2006~2016	1996~2016
전체	-0.2	1.4	0.6	-3.7	-4.4	-3.5	-0.2	1.5	0.6
1	-5.9	-5.6	-5.8	6.6	67.5	245.3	-1.4	1.7	0.1
2	-2.2	0.0	-1.1	-2.1	5.6	25.6	-1.5	1.8	0.1
3	-1.1	1.3	0.1	-3.2	-1.0	3.7	-0.9	1.8	0.5
4	-0.4	1.4	0.5	-3.2	-2.4	-2.3	-0.3	1.5	0.6
5	0.0	1.6	0.8	-3.3	-3.7	-3.9	-0.1	1.5	0.7
6	0.2	1.6	0.9	-3.8	-4.4	-5.7	0.2	1.5	0.8
7	0.4	1.5	1.0	-3.5	-5.9	-6.7	0.1	1.4	0.8
8	0.5	1.5	1.0	-4.1	-6.6	-7.8	0.2	1.3	0.8
9	0.6	1.5	1.0	-4.6	-7.6	-8.7	0.2	1.4	0.8
10분위	0.0	1.7	0.8	-5.1	-9.6	-11.3	-0.5	1.5	0.5

주: 분위 구분과 소득 비교에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5) 4장까지의 분석에서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개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개인가중치는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이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재분배소득의 분포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1996년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면 모든 분위에서 부담금의 규모가 공적이전소득보다 커서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음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2~3분위까지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양수로 전환되었고 다른 분위에서도 절대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모든 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인 증가가 있었다. 그 결과 명목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표 13>의 우측과 같이 양수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소득 증가율의 역진성이 강해 재분배소득의 비중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여전히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재분배 정책에 여전히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다.

## 2) 가구유형의 변화와 재분배정책

3장과 4장의 논의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한 후 노인가구주 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의 연령별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구원의 연령대별 구성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을 세 연령대로 구분하였다. 우선 모든 가구 구성원을 60대 이상 고령자, 20~59세의 근로연령, 그리고 19세 이하의 아동으로 구분한다.<sup>6)</sup> 다음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근로연령대와 고령 가구주 가구로 구분한 후, 가구원 가운데 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구성을 세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했을 때의 가구 유형별 가구비중과 인구 비중은 <표 14>와 같다.

6) 4장까지의 논의와 이 절의 논의에서 연령대 구분이 다른 이유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연령 정보가 정확히 만 연령으로 주어지지 않고 연령 구간별 가구원수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표 14〉 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대 구성에 따른 유형별 가구 비중 변화

(단위: %, %p)

가구주 연령	가구원 구성	가구비율				인구비율			
		1996	2006	2016	변화 (1996~ 2006)	1996	2006	2016	변화 (1996~ 2006)
20-50대 (근로연령)	없음	9.2	9.2	11.8	2.6	2.8	3.1	4.6	1.8
	아동	3.7	4.5	3.9	0.2	2.9	4.2	4.1	1.2
	고령	1.4	1.9	2.0	0.6	1.0	1.4	1.8	0.8
	고령+아동	0.6	0.8	0.6	0.0	0.7	1.0	0.9	0.2
	근로	16.7	19.5	15.8	-1.0	13.4	17.7	16.1	2.6
	근로+아동	49.3	37.7	29.9	-19.3	59.7	49.2	44.3	-15.4
	근로+고령	2.0	2.3	1.4	-0.6	2.3	2.9	1.9	-0.4
	근로+고령+아동	5.6	3.3	1.7	-4.0	9.3	5.9	3.2	-6.1
60대이상 (고령)	없음	3.6	6.9	13.7	10.1	1.1	2.3	5.3	4.2
	아동	0.5	0.4	0.3	-0.2	0.3	0.3	0.2	-0.1
	고령	2.5	5.9	9.7	7.2	1.6	4.1	7.6	6.0
	고령+아동	0.2	0.4	0.2	0.0	0.2	0.5	0.3	0.0
	근로	2.3	4.2	5.3	3.0	1.9	3.5	4.9	3.1
	근로+아동	0.8	0.6	0.3	-0.5	1.1	0.9	0.5	-0.6
	근로+고령	0.9	1.8	2.9	2.0	0.9	2.0	3.7	2.7
	근로+고령+아동	0.3	0.6	0.4	0.1	0.5	1.0	0.8	0.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표 14〉에 따르면 1996년과 2016년 사이에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의 가구는 고령자 1인 가구이고(13.7%포인트 증가), 다음이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고령자인 가구(7.2%포인트 증가)이다. 반대로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구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주와 근로연령대 가구원, 그리고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인데, 이 유형의 가구는 이 기간 동안 무려 19.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해당 유형의 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 변화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폭의 인구비율 증가를 보인 유형은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고령자인 가구이고 다음이 고령자 단독가구이다. 감소폭이 가장 큰 가구 유형은 근로 연령대의 가구 및 가구원, 그리고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두 명 이상의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고령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유형의 가구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고, 가구주가 고령자인 가구의 비중은 아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하였다.

동일한 가구주 연령대 안에서도 가구구성에 따라 가구소득의 증가율이 달리 나타난다. 〈표 15〉는 가구 유형별로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 증가율과 각 시점별 재분배 소득의 비중을 보여준다.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와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확연히 비교된다. 고령 가구주 가구의 실질소득은 20년간 예외 없이 감소하였다. 고령 가구주 가구 안에서도 세부 유형별로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령자 가구주 가구 안에서 실질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고령자와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표 15〉 가구유형별 실질소득증가율 및 재분배 소득의 비중

(단위: %, %p)

가구주 연령	가구원 구성	실질 시장소득 평균 증가율			재분배소득비중		
		1996~2006	2006~2016	1996~2016	1996	2006	2016
20-50대 (근로연령)	없음	-0.8	2.1	0.7	-2.5	-3.7	-6.4
	아동	0.3	1.9	1.1	-2.2	-0.6	-1.6
	고령	-1.6	1.6	0.0	-5.0	-0.7	12.6
	고령+아동	1.4	2.4	1.9	-1.8	-2.0	0.6
	근로	0.3	2.4	1.3	-3.7	-6.1	-8.1
	근로+아동	0.5	1.9	1.2	-4.0	-7.1	-9.2
	근로+고령	-0.9	1.8	0.5	-4.3	-2.7	-3.0
	근로+고령+아동	-0.3	2.5	1.1	-4.2	-5.0	-4.3
60대이상 (고령)	없음	-2.0	-0.9	-1.4	-10.0	25.8	56.5
	아동	1.9	-6.4	-2.3	1.0	17.3	70.0
	고령	-4.8	1.3	-1.7	2.9	34.0	50.7
	고령+아동	0.4	-5.7	-2.7	5.6	15.0	72.6
	근로	-2.2	1.7	-0.3	-1.9	3.3	4.4
	근로+아동	-3.8	1.7	-1.1	-1.7	6.3	7.2
	근로+고령	-1.2	1.2	0.0	-0.5	8.3	15.2
	근로+고령+아동	-4.9	1.6	-1.7	2.4	7.5	10.6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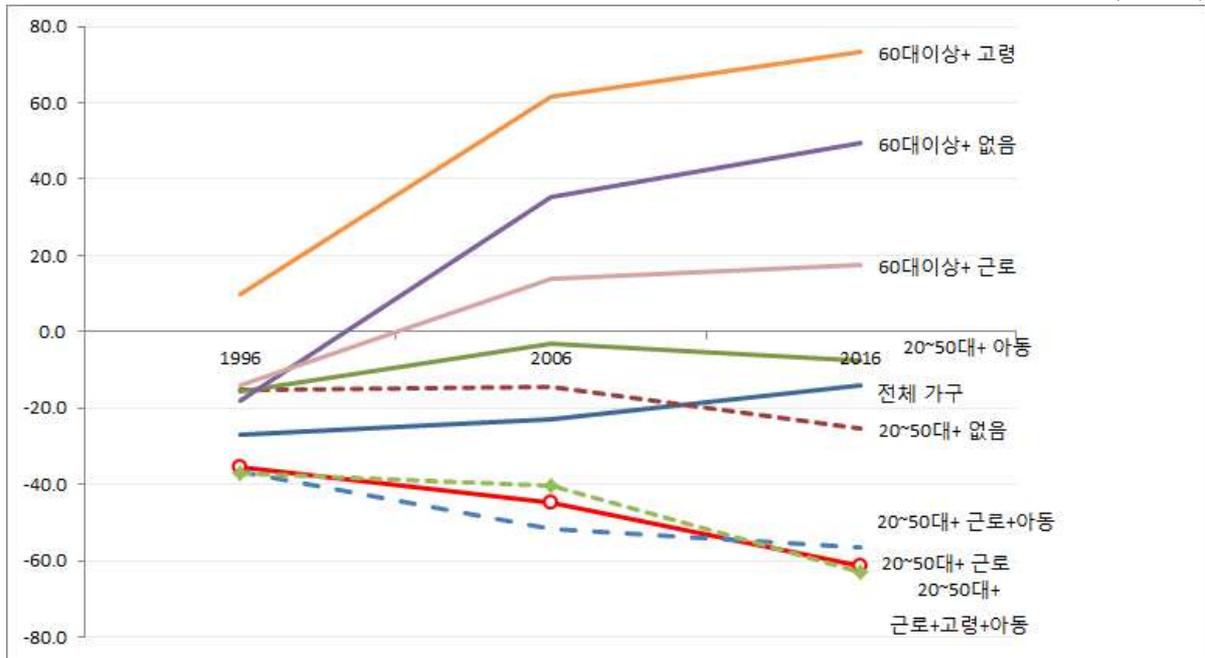
가구소득 대비 재분배소득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 재분배정책이 주로 어느 가구 유형에 집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령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고령자와 아동으로 이루어졌거나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중심으로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물론 이는 시장소득 자체가 감소한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분배 소득의 비중이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 내에서는 각 유형별로 계층적 지위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대상을 좀 더 특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변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때 재분배정책의 효과란 재분배소득이 빈곤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가구의 시장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할 때, 재분배소득은 빈곤선과 가구 시장소득의 차이(빈곤격차)를 얼마나 메우는가(빈곤격차 해소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9>는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빈곤층에 대해, 그리고 <그림 10>은 중위값의 60%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격차 해소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7) <그림 10>의 경우 중위소득 60%선과의 격차 해소 효과

<그림 9> 저소득층 재분배소득의 빈곤격차 해소 효과 변화(빈곤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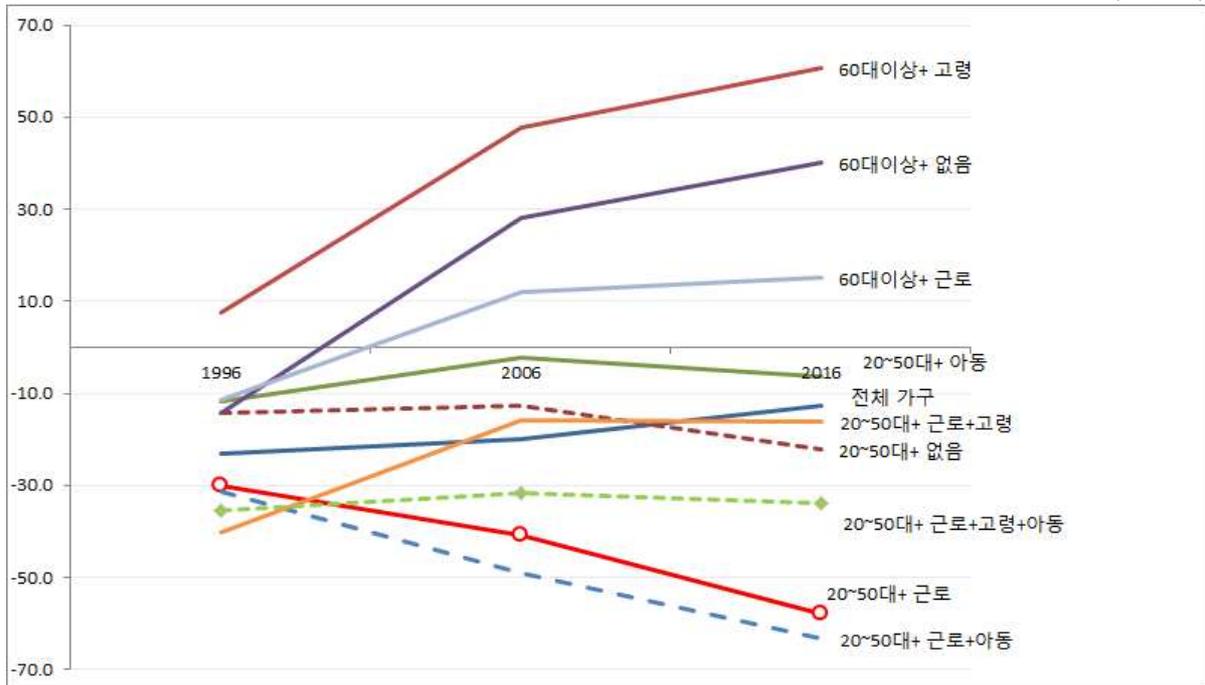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그림 10> 저소득층 재분배소득의 빈곤격차 해소 효과 변화(중위소득의 60% 이하)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및 <가계동향조사(2006, 2016)> 원자료.

<그림 10>에 따르면 비교 대상 가구 유형 가운데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는 빈곤격차 해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반대로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 가운데에는 재분배

정책의 빈곤격차 해소효과가 감소한 가구 유형이 존재한다. 빈곤격차 해소 효과가 음이라는 것은 재분배소득이 오히려 가구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며,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조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이 점점 더 가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연령대 가구주와 또 다른 근로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빈곤격차해소효과가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들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하고 오히려 점점 부담이 되는 셈이다.

재분배정책이 반드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찰 대상 집단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1>에서 보듯이 중위소득의 60% 선까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연령대 가구주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근로연령대 가구는 재분배 소득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빈곤격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6. 재분배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함의

이상의 논의에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된 요인과 재분배 정책이 효과가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과 고령화 효과에 의해 심화되었고, 200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은 노동소득 불평등 요인이, 이후 10년은 고령화 요인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신욱(2014)이나 이병희(2014)와 같이 유사한 방법을 적용했던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다.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추동한 기간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재분배정책이 집중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물론 이러한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시장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따라서 향후에도 재분배 정책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재분배정책 효과가 가구 유형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향후 재분배 정책의 설계 측면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연령대의 가구원, 특히 가구주가 있는 빈곤가구나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의 확대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소득보장제도 변화를 보면 기초연금제도의 신설과 증액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에 집중되었고 근로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제도는 근로장려세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강병구(2017)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기능은 약하고 실질적으로 중간소득층 이상의 계층을 표적화하는 제도이다. 근로연령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정체 경향과 재분배 소득의 제한적 효과를 감안할 때 이 집단에 대한 재분배 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강화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근로연령대 가구주가 다른 근로연령대 가구원과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이 <표 14>에서 보았듯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구 단위의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점점 효율성을 상실해 갈 것이며, 따라서 가구 단위의 지원 제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제도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하나는 이 유형의 가구에서 재분배소득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집단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근로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이 보편적 급여의 성격을 지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최근 아동수당의 대상자 설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여전히 보편적 현금급여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경우에도 이러할진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논란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급여와 조세부담 구조의 누진성 강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선별적 급여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근로연령대 가구소득에서 재분배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방법이 현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2017) 「취업층 세제지원 사업군 평가」 강신욱 외(2017) 『사회보장제도 생계지원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2014)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한울아카데미.
- 강신욱·김현경(201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 김진욱·정의철(2010) 「도시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권 1호, pp.33-60.
- 성명재·박기백(2009) 「인구구조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권 4호, pp. 5-35.
- 윤종인(2017), 「생애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실증연구: 코호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학연구』 10권 4호, pp.45-70.
- 이병희(2014)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 단계적 분석 방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한울아카데미.
- 이철희(2008) 「1996~2000년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요인분해: 임금, 고용, 근로시간, 가구구조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31권 2호, pp.1-34.
- 장지연·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호, pp.71-109.
- 홍석철·전한경(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권 1호, pp.71-110.
-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Growing*, OECD Publishing.